

251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5. 28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방안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정희윤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방안

	요약	3
I.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과 국내 현황	4
II.	미국의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지원제도	8
III.	현장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11
IV.	정책제언	14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182
yjchoi@si.re.kr

새로운 오염물질과 배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 사업장이나 같은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환경문제가 여러 환경매체에 영향을 주고받는 등 환경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통합환경관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유럽에 처음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어 2017년부터 일부 업종의 대규모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환경매체별 관리 대상에도 속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황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바탕으로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소규모사업장 지원조직은 지향점이 성장·환경으로 분리되어 통합관리가 곤란

국내에는 중앙정부, 서울시 등이 소규모사업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제도와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관련 정책과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지원조직도 ‘안정적 경영 및 성장’은 경제진흥본부, ‘환경관리’는 기후환경본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다. 소규모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분야 간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도 각각의 목적대로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관리를 통합지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와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이제는 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외에도 ‘환경’을 필수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네소타주도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두고 있거나, 두 조직 간 협력체계를 두고 있다. ‘환경관리’도 특정 환경매체가 아닌 전반적인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고려해 환경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통합환경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장’과 ‘환경’으로 분리된 기존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환경관리의 법적 근거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례의 개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조례’ 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I.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과 국내 현황

사업장 환경관리는 매체별 관리에서 통합환경관리로 전환 중

환경매체별 환경관리는 한계에 직면

-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산업·환경문제의 속성으로 매체별 관리는 비효율적
-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환경관리방법은 최종배출구 관리에 집중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예방보다 사후처리 중심
- 한 사업장, 같은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한 매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등 환경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경향
- 매체별로 저감 노력을 추진하다 보니 부분별 개선 효과가 총체적인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매체별 관리·규제가 사업장뿐 아니라 행정에도 부담을 가중

1990년 후반, EU는 통합환경관리를 사업장의 환경관리방식으로 채택

- EU의 통합환경관리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업종 중심의 대규모사업장
- 통합환경관리는 환경오염 간의 상호 관련성을 토대로 환경을 한 체계로 보고 대기·수질·토양 등 모든 환경매체에 대한 총체적 영향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접근 방법
- 통합환경관리지침(IPPC Directiv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한 환경매체가 아닌 전체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청정생산(Clean Production)을 유도할 목적으로 1996년 도입
- 2010년에는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환경기준의 적용·허가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IPPC 지침을 보완한 산업배출지침(IED: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을 채택
- EU 회원국들은 IED 지침을 2013년부터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2014년 1월부터 기존의 IPPC 지침을 대체

- EU보다 먼저 통합환경관리를 추진한 영국, 독일은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 관리도 시행
 - 영국은 환경오염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를 대·중·소규모시설로 구분하고, 중·소규모 시설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폐수·폐가스·악취·소음·진동의 제거효율과 에너지 소비 절감, 토양에 미치는 영향, 사고예방 등을 검토해 허가
 - 독일은 대·중·소규모시설별 허가절차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해 진행하며, 허가 시 폐수·폐가스·폐기물·악취·소음 등의 제거효율과 에너지 소비 절감, 토양에 미치는 영향, 산업보건, 안전 및 화재 대응방안 등을 검토

우리나라, 대규모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소규모사업장은 매체별 관리

- 2017년부터 일부 업종의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시작
 -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1월부터 시행
 - 통합환경관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질·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 현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핵심은 최적의 저감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통합인허가이고, 부차적으로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적 기술진단 및 지원을 제공
 -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진단과 지원 중심의 점검으로 전환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
- 3~5종의 중소기업사업장은 기존처럼 환경매체별 개별법으로 지방정부가 관리하여, 기존의 허가와 사후관리 강화를 계획

서울에는 대규모사업장이 40개소 내외, 환경관리 사각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

- 서울에는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허가 대상이지만,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중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
 -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수질 및 대기 1, 2종 사업장은 서울에 37개소(2015년 기준)
 - 이는 각각 서울시 전체 수질 1~5종 사업장(3,327개소), 대기 1~5종 사업장(2,104개소) 수의 0.4%와 1.2%에 해당할 뿐이고, 대다수는 4~5종의 중소규모사업장

- 신고·허가 대상조차 되지 않는 영세 소형사업장은 더욱 많을 수 있어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만 신고 및 허가 대상임을 고려하면 사업장 수는 더욱 증가
 -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제조업체 수는 61,218개소
 - 이 중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56,589개소로 서울시 전체 제조업체의 92.4%를 차지
 - 모든 제조업체가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각 환경매체 관련법이 규정하는 배출시설에는 제조업종 대부분이 포함

- 소규모사업장은 기존 매체별 환경관리조치 어려운 실정
 - 매체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에 놓여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
 - 시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사업장이 많아 다양한 환경민원을 유발
 - 전문적 대응능력 미흡, 정보 및 기술전달체계 미비 등으로 자체적 환경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국내 소규모사업장 관련 정책·사업은 ‘성장’과 ‘경영안정’ 중심

국내에도 소규모사업장의 ‘성장’과 ‘경영안정’ 지원 목적의 법, 제도, 정책, 사업은 다양

-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 대부분 정책과 제도가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에 초점
-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관리를 위한 제도와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미

서울시의 소규모사업장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성장’과 ‘환경’으로 분리...협력체계 미비

- 서울시 지원조직도 ‘안정적 경영 및 성장’은 경제진흥본부, ‘환경관리’는 기후환경본부 중심으로 분리
- ‘안정적 성장’ 관련 지원은 경제진흥본부와 서울산업진흥원, ‘환경관리’ 관련 지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로 담당
- 소규모사업장의 ‘성장’과 ‘환경관리’ 지원사업의 체계적 연계 미흡
- ‘안정적 성장’ 관련 지원은 노후시설 개선 수준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환경관리 측면의 지원이 미미
- ‘환경관리’ 관련 지원은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문제에 대한 통합적 현장환경진단을 제공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문제사업장별 컨설팅 중심으로 장기적·체계적 사업장 환경관리지원으로 발전시킬 필요

II. 미국의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지원제도

미국,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관리를 통합지원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 미국 EPA 507프로그램(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지원제도)은 소규모사업장의 복잡한 환경규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1990년 대기청정법 개정 시 이 법의 507항(section)에 소규모사업장이 복잡한 대기 규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규정
 - 이후 소규모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대기분야 외 다른 환경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이 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지원제도는 역할에 따라 3가지 요소로 구성
 - 소규모사업장 환경지원 프로그램(SBEAP: Small Business Environmental Assistance Program)은 환경규제 관련 정보전달, 규제 대응 방법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
 - 소규모사업장 옴부즈만(SBO: Small Business Ombudsman)은 사업자와 규제기관을 연결하는 창구기능(규제에 대한 중재, 환경단속 활동의 적절성 검토 등)
 - 규제자문위원회(CAP: Compliance Advisory Panel)는 정부부서, 사업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 주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각 부문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 또는 수정해 운영

표 1. 미국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소규모사업장	- 고용인 100명 이하 - 오염물질당 연간 50톤 미만 배출 - 모든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이 연간 75톤 미만인 사업장
환경 분야	- 공통으로 대기분야를 지원 - 각 주에 따라 환경 분야를 확장해 통합 지원
업종	- 환경적 문제가 있는 모든 사업장 예) 주유소, 세탁소, 네일숍, 인쇄소, 자동차수리소 등



그림 1. 미국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지원제도의 체계

자료: 미국 EPA, 2012, EPA's 507 program, 20 Years of Success in Helping Small Business

펜실베이니아주는 소규모사업장 진흥센터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합관리

- 소규모사업장의 '성장', '환경문제 관리'를 모두 총괄하는 소규모사업장 진흥센터(SBD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 소규모사업장의 '성장'을 위한 마케팅, 경영, 기술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지원 프로그램(EMAP: Environmental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운영
 - EMAP는 환경전문가가 환경규제 대응, 에너지 효율, 신기술개발, 오염방지 등을 위한 일대일 컨설팅 제공, 에너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환경문제 저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와 기술지원센터 운영
 - 오염방지 관련 공정 도입에 50%의 매칭지원금 지원(최대 9,500달러(1천만 원)), 저금리 융자지원(비용의 75%, 최대 10만 달러(1억 800만 원))
 - 지역 대학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기술평가, 조사, 기술 훈련 등을 제공

미네소타주는 환경관리, 경영, 기술을 지원하는 각 기관이 협력하여 소규모사업장 지원

- 소규모사업장 환경지원 프로그램(SBEAP)에서 주도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 지원과 함께 기술지원프로그램, 경영 및 성장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SBEAP는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관련 현장방문, 핫라인, 워크숍, 소식지 등 제공
- 사업장의 공중보건과 환경문제 개선을 포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네소타 기술지원 프로그램(Minnesot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과 협력
- 소규모사업장 진흥센터(SBDC)와 협력하여 소규모사업장이 환경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장비 구매나 오염된 공간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에 협력

III. 현장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소규모사업장도 다양한 환경문제를 겪을 가능성 커

서울에 있는 대부분 업종에 2개 분야 이상의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

- 서울시에 사업체가 1개 이상 등록된 96개 중분류 업종과 환경오염 배출산업 분류를 매칭하면, 대부분 업종이 2개 분야 이상의 환경오염 배출산업에 해당
- 대부분의 제조업은 폐수, 대기, 악취, 화학물질의 4가지 분야 환경배출시설에 포함
 - 폐수, 대기, 악취, 화학물질의 4개 분야를 모두 배출하는 업종이면서 서울에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현장기술지원 전문가도 서울시의 주요 소규모 업종이 복수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고 인식

- 현장기술을 지원받은 서울시의 주요 소규모 업종 대부분이 3~4개 환경 분야에 걸친 문제를 내포
 - 전반적으로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악취 관련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업종이 다수
 - 유해화학물질, 소음,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분야보다 소수

표 2. 설문조사 개요

조사목적	소규모사업장 환경문제에 대한 현황과 해결을 위한 시사점 모색
조사방법	구조화된 웹 설문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6년 12월 8일~12월 23일
조사대상	서울시 및 경기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등록된 중소사업장의 환경 관련 현장기술지원 전문가 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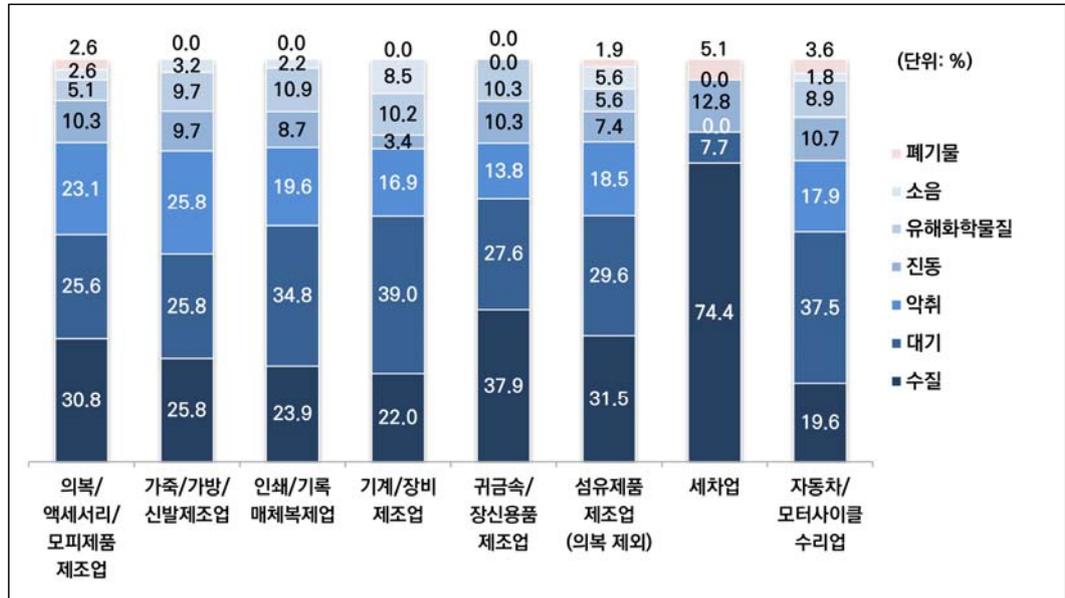


그림 2. 현장전문가가 보는 업종별 환경문제

※ 상기 수치는 업종별 현장기술지원 환경문제를 복수응답으로 받은 후 합이 100%가 되도록 재환산한 것으로, 업종별 현장기술지원 환경문제의 상대적 비중을 의미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에 전문가 다수가 동의

현장전문가의 78%가 소규모사업장 환경문제 관리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

-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관리수준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평가는 ‘다소 미흡하게 관리’가 72%, ‘전혀 관리 안 됨’이 6%로 부정적 의견이 다수
- 현장전문가의 80% 이상이 ‘환경문제 완화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 시설 유지관리 기술·역량 부족’을 대도시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의 한계로 꼽아
 - 이어 ‘사업주의 전문지식 부족’은 66%, ‘관련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부담’이 64%, ‘시설설치에 협소한 공간’은 55%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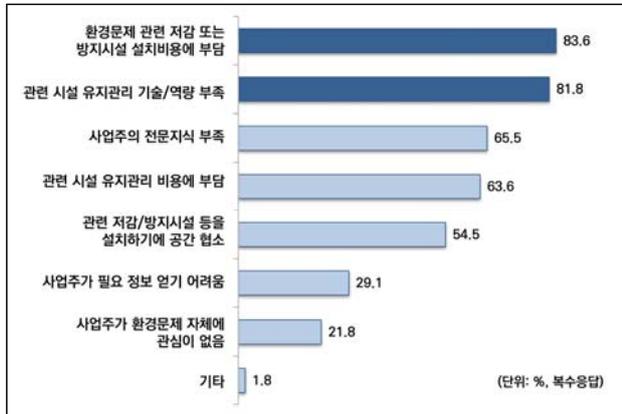


그림 3. 현장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의 한계

사업장의 전반적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 현장기술지원의 범위로는 ‘전반적인 환경 분야 진단/통합 지원’에 63.6%, ‘민원이 되는 환경 분야만 집중지원’에 36.4%가 응답
- 현장기술지원의 적정 횟수로는 ‘해결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7%로 가장 많아
-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규제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규제 강화’와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38.2%(1순위 기준)로 유사한 비율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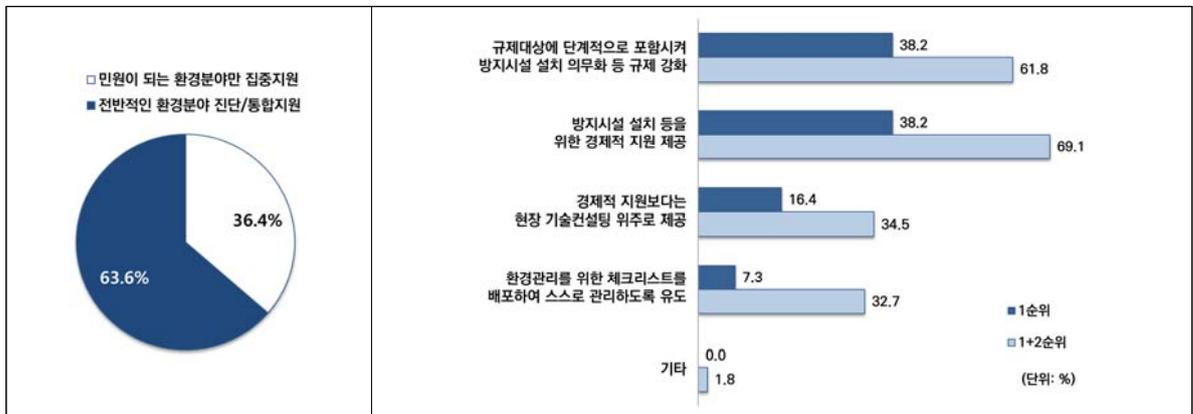


그림 4. 현장전문가가 보는 현장기술지원 적용 범위

그림 5. 현장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

IV. 정책제언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관리를 연계 지원하고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 기반 구축

- 소규모사업장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고려해, 통합환경관리는 지원정책을 우선 시행하여 자율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해 관리
-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경영 및 성장’과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서울의 소규모사업장 현황을 고려하여 통합지원을 우선 적용할 업종을 선정하고 단계적 확대
-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적, 기술적 지원의 병행이 필요
-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조례의 개정과 제정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는 先 지원, 後 규제로 추진	- 소규모사업장도 통합환경관리로 접근 필요 - 지원정책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수용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환경 총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 경영 및 성장’과 ‘환경관리’로 분리된 기존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지원조직의 협력체계 마련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지원 병행	-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가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기술적 지원의 병행 필요
소규모사업장 통합지원 우선 적용 업종을 선정하여 단계적 지원	- 업종별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지원이 현실적 - 통합지원 1순위로 6개 업종, 2순위로 5개 업종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진행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제정 필요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는 先 지원, 後 규제로 추진

소규모사업장도 매체별 관리보다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통합환경관리 필요

- 한 업종이 여러 환경 분야에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면 소규모사업장도 통합환경관리 방식이 효율적
- 제조업종 대부분은 대기, 수질, 악취, 화학물질 등 3~4개 분야 이상의 환경 배출시설에 해당해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
- 제조업 외 세탁업, 자동차 수리업 등 다른 업종도 2개 이상의 환경 분야 배출시설에 해당
- 업종이 같으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한 환경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중소규모사업장도 매체별 관리보다 통합적 환경관리가 필요

지원정책을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수용

- 소규모사업장의 영세성과 비전문성 등을 고려, 지원정책을 우선 시행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환경 총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안정적 경영 및 성장’과 ‘환경관리’로 분리된 기존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지원조직의 협력체계 마련

- 소규모사업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기관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를 구성
- 협력기구는 소규모사업장 통합지원을 위한 총괄 계획의 수립과 조정·평가, 우선 통합지원 대상 업종의 선정과 집중지원방안 결정

- 협력기구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사업·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제진흥본부와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계획하는 기후환경본부 등이 참여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는 대상 업종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적정기술 개발과 연구지원을 강화
- 소상공인의 소통창구 역할로 설립된 자영업지원센터는 관련 정보제공·홍보를 총괄하면서 업종별로 조직된 지원센터와 협력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서울지역의 대학자원과 연계해 인력자원을 확대 구성하고 현재의 교육과 사업장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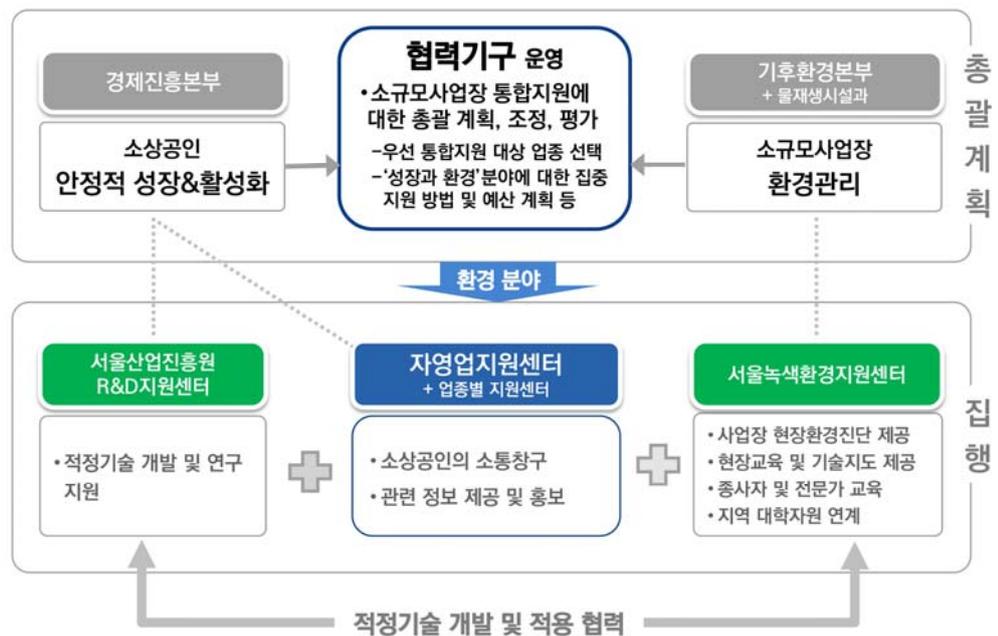


그림 6. 소규모사업장 ‘안정·성장’과 ‘환경’을 총괄하는 통합지원체계(안)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지원의 병행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가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 전문적 환경문제 진단과 함께 환경관리 기술적용을 위한 지원금, 용자 등 경제적 지원의 동반이 필요
 - 현재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현장기술지원은 컨설팅 중심
 -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도 영세한 사업장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기술을 도입·적용하기에는 한계
 - 해외에서도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 국내 현장전문가도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환경관리 개선에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환경문제 종합진단, 적용 가능한 기술과 방법 검토, 최적의 가용기술 적용을 위한 현장 기술교육 등의 지원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담당
- 서울산업진흥원은 적정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추진과 사업장 적용을 지원
 - 소규모사업장이 저비용으로 쉽게 적용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적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R&D 연구지원을 확대
 - 대상 업종의 집적지에 공동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우선 지원하고, 이어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있는 사업장과 환경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지원
-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사업장은 정기적 통합환경점검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
 - 환경점검은 단속 위주가 아닌 자율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방식으로 진행
 - 기술지도 중심의 환경점검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서울지역의 대학 인력자원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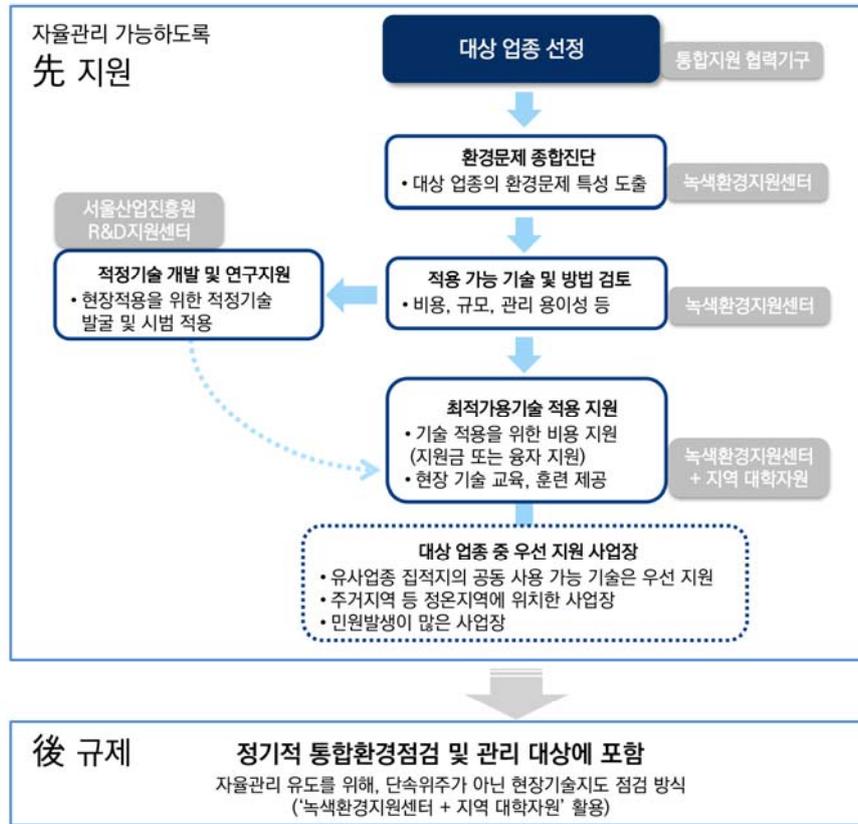


그림 7.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 절차

소규모사업장 통합지원 우선 적용 업종을 선정하여 단계적 지원

통합지원은 업종별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단계적 시행이 현실적

-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통합지원하는 접근방식이 현실적
-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 통합지원 우선순위 선정은 업종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지원제도와 사업도 업종별로 진행될 때가 많아 기존의 제도와 조직 활용이 가능
- 같은 업종은 비슷한 환경문제를 경험하므로 집중적인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통합지원 1순위로 6개 업종, 2순위로 5개 업종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진행

- 통합지원 1순위는 업체 수가 많고 기존 사업·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이면서 관련 지원센터 등의 조직이 이미 구축되어 사업 진행이 수월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6개 업종을 선정
- 2순위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기술지원 주요 대상 업종을 추가로 고려해 5개 업종을 선정

✓ 통합지원 1순위 업종

- 고려사항: 기존 사업·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업체 수 多) + 지원센터 등 이미 조직 구축
-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통합지원 2순위 업종

- 고려사항: 기존 사업·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업체 수 多)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지원 주요 대상
- 5개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그림 8. 소규모사업장 통합지원 우선적용 업종(안)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제정이 필요

- 단기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확보가 필요
- 기존의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항목을 추가

표 3.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기존 서울시 조례의 추가 항목 예시

제○조(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 개선)

-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또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오염 배출 방지 및 저감 설치 사업비용
 2. 환경오염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3. 환경오염 배출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 ② 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 개선사업의 지원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장기적으로는 적극적 환경관리를 위해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
-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계획 수립, 사업장 환경실태조사, 경제적·기술적 지원, 적정기술 개발지원, 기존의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계획과 연동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